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 동 산 소 유 권 이 전 등 기 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 등

- 1)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안 제6조)
- 2)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2명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보증인을 위촉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법 제11조제4항과 제7조 제6항에 정한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음(안 제8조)

나. 사실증명서, 보증서의 발급절차

- 1)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2)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청이 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를 발급함(안 제11조제1항단서)
- 3)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증서에는 보증인 5인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호사·법무사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등에게 그 보증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확인서 발급 절차

-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안 제11조)
-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출석요구하거나 또는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함(안 제12조)
- 3) 대장소관청의 통지 예외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자료제공요청 또는 행정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하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와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 4) 대장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기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6) 확인서발급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기타 규정

- 1) 대장소관청이 보존하여야 할 자료를 이 영에 따라 작성된 별지 서식의 서류와 장부로 함(안 제20조)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경우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3)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증 사무의 처리,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의 위촉·해촉에 대한 사항 등으로 하되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4) 대장소관청 등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마. 각종 신청서 등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건물표시변경신청서, 확인서발급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장소관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제3조(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

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등)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6조(보증인의 자격)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정신적 제약으로 법 제11조제2항의 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시·구·읍·면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되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⑥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7조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 시·구·읍·면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서 발급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

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5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1조(확인서 발급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취지 확인) ① 대장소관청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통지) ① 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1조에 따라 자료제공요청 또는 행정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대장소관청의 장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대장소관청은 제15조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와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 경우 “등기명의인”은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로 본다)에는 제외한다.

제14조(현장조사) ① 법 제11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관계
5.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6.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제15조(공고) 법 제11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

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기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서 발급)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

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① 대장소관청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이 영에 따라 작성된 별지 서식의 서류와 장부로 한다. 다만 대장소관청은 법 및 이 영에 규정에 의하여 원본을 교부하여 원본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한다.

②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대장소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및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행정안전부장관
4. 판결(결정)문 사본 및 소송 서류 : 소관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
5. 재외국민 등록자료 : 외교부장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로서 대장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 각 호 중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증인 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증 사무의 처리 및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2.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건물표시변경, 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정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소유명의 변경(복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신청·발급, 보증인 위촉·해촉, 보증취지의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요청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관한 사무

② 보증인은 법 제1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 및 국·공유부동산의 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와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은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이동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등록전환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사항정정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	---

첨부서류 1. 보증서 1부. 2. 측량성과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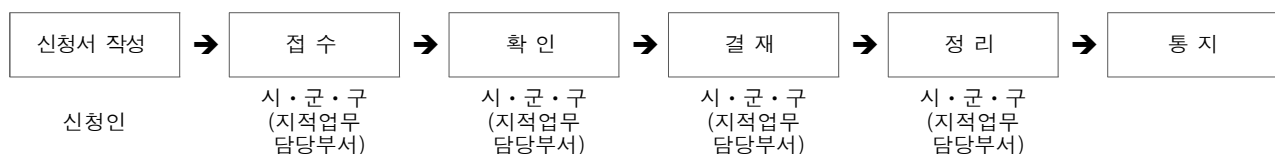
처 리 기 간

1. 등록전환 : 3일 5. 등록사항 정정 : 3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3. 토지(임야) 합병 : 5일	4.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	------------------	-------------------	---------------------

수 수 료

- | | |
|---------------------------------|--------------------------------|
| 1.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 3.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
|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 4.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
| 5. 등록사항 정정 : 무료 | |

처 리 절 차



건물표시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물의 표시	소재	소유자		
	구조	면적(㎡)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위의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중 건물표시사항에 관한 변경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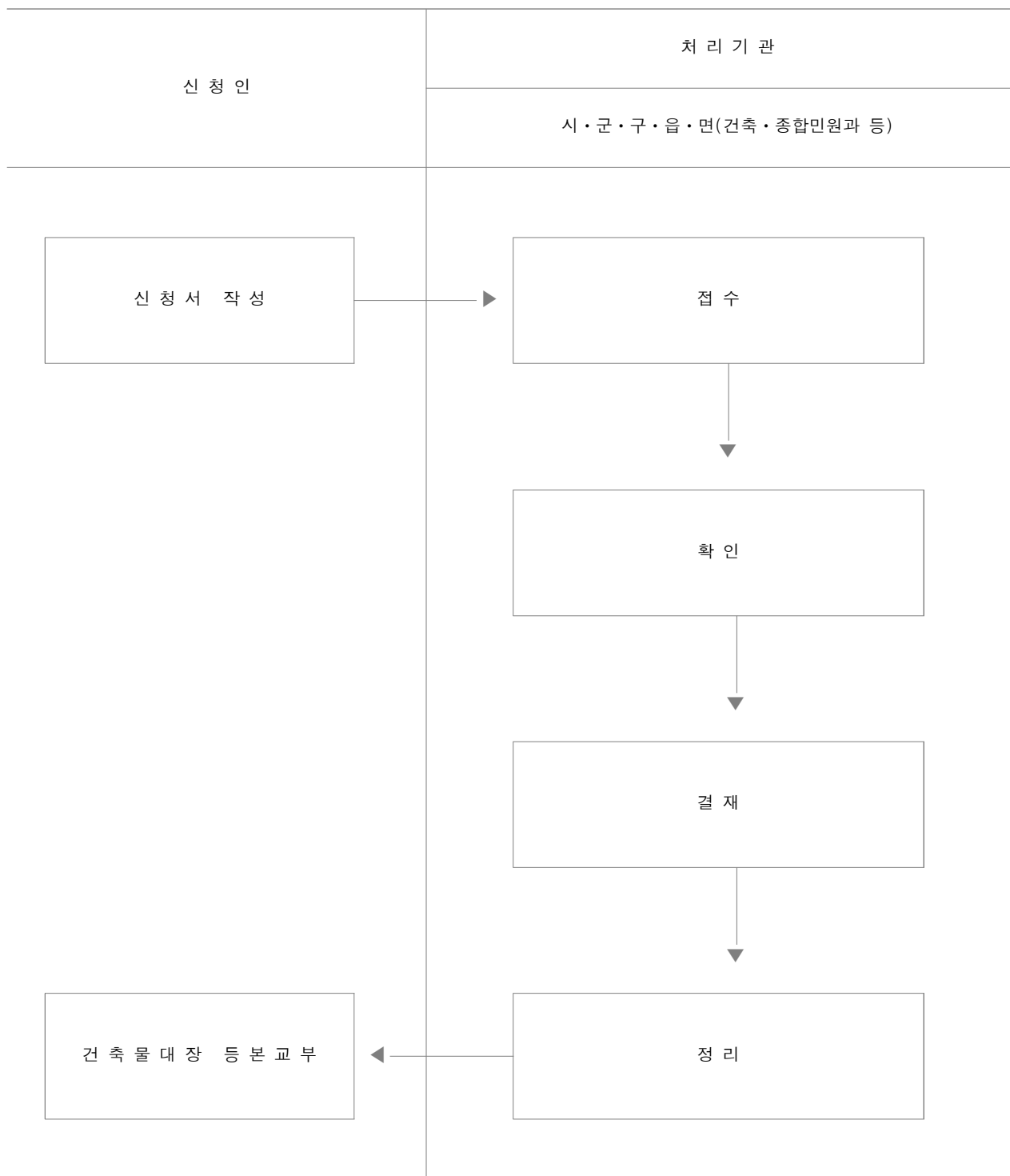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보증서 1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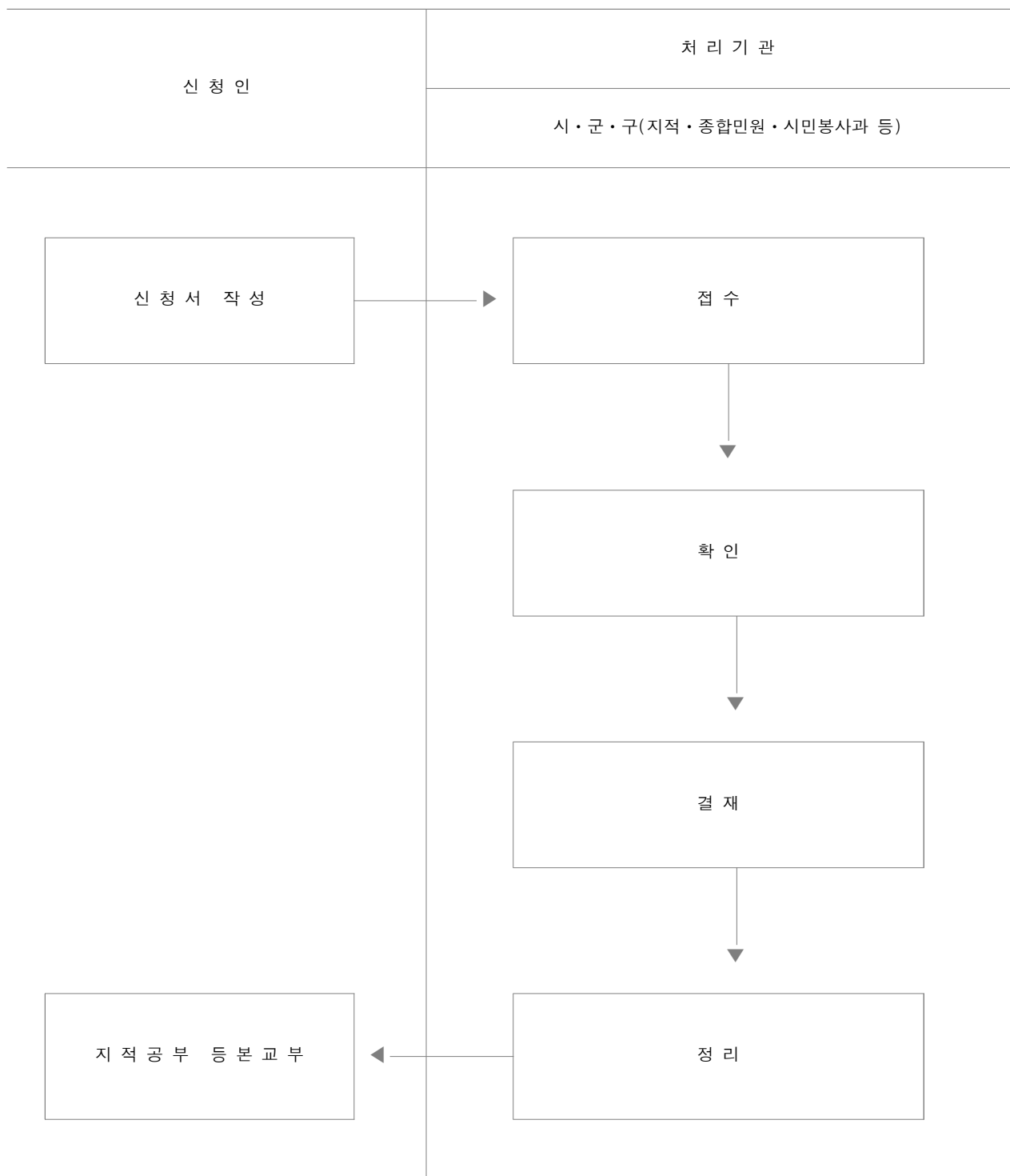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 정정) 전			(변경 ·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 []정정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 명의인 표시	변경전			
	변경후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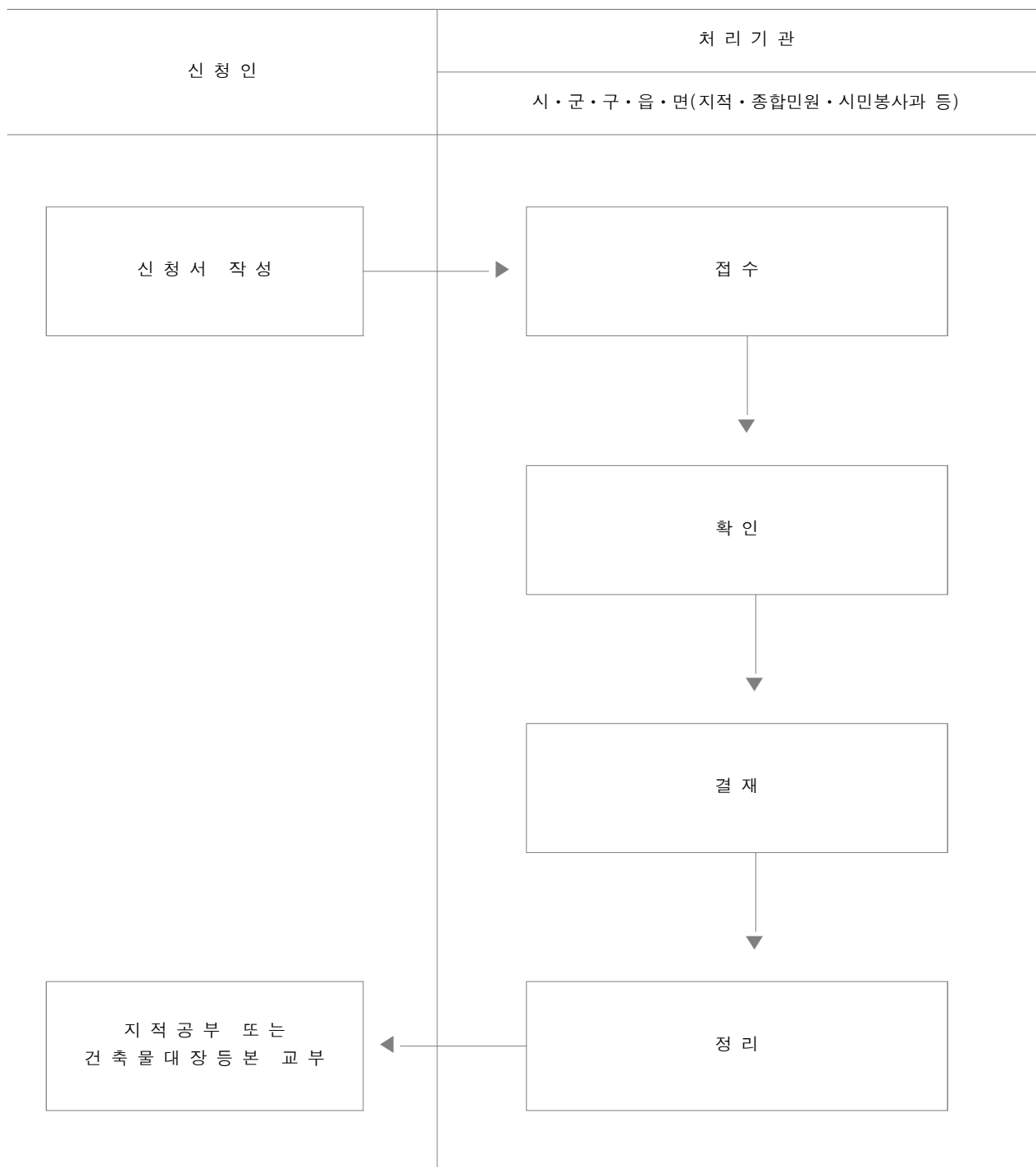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귀속(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자	성명	계약일자	년 월 일
	계약금액	원	완납일자	
		미납상황		

위의 귀속(국·공유)부동산에 대한 매각 사실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국·공유부동산관리청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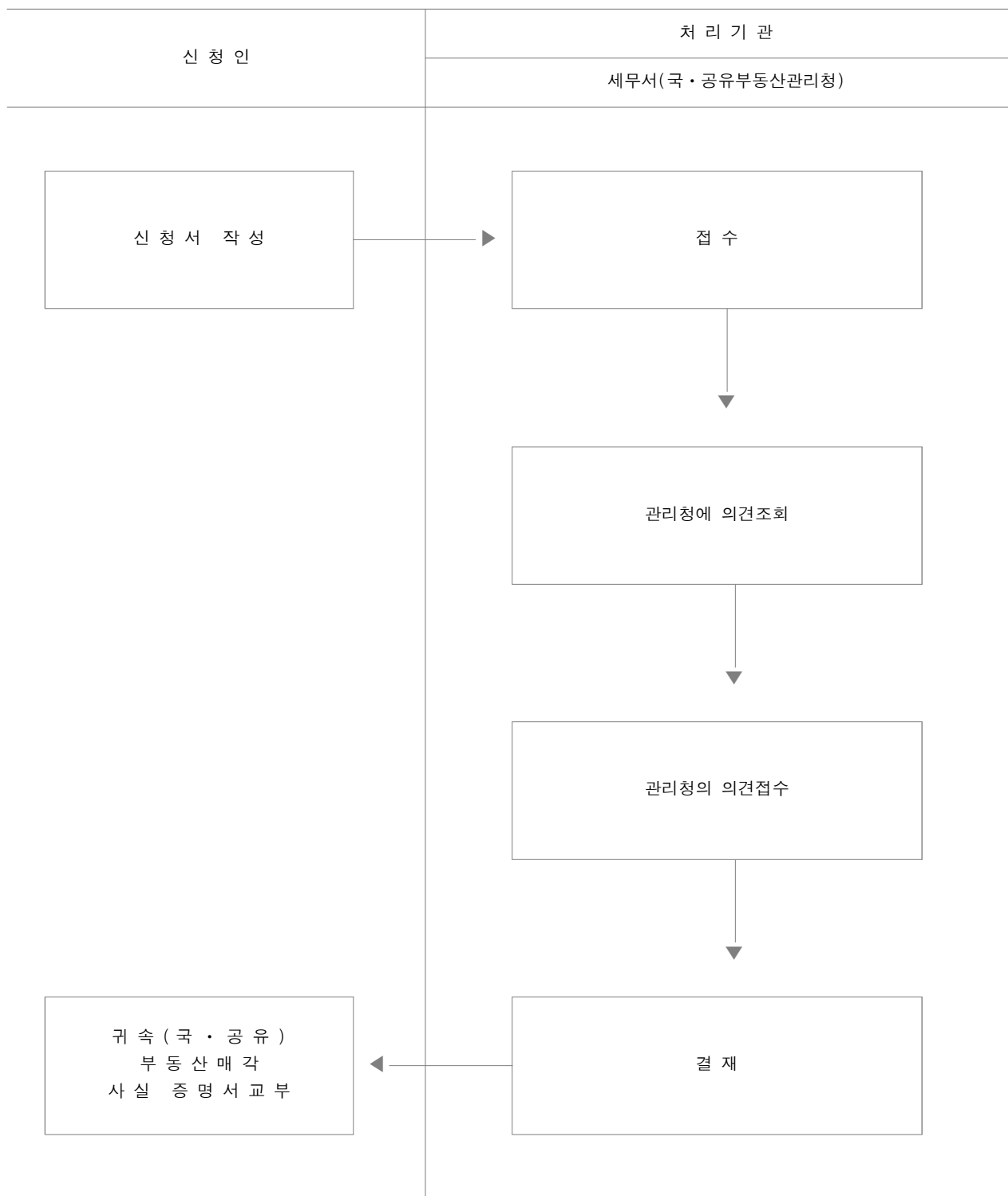
세무서장
(국·공유부동산관리청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증인위촉사실공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촉일시	년 월 일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일간)					
위촉내역	읍·면	동·리	보증인	변호사·법무사	생년월일	비고
				[]		
				[]		
				[]		
				[]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면장 **직인**

위 촉 장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귀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제1호[] 제2호[] 의 보증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면장 직인



해 촉 장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귀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해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면장 직인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										
시·군·구		시 군 구	읍·면	동 리 동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인의 담당동·리	변호사· 법무사	위촉연월일	인감	전화번호	해촉연월일	비고
					[]					
					[]					
					[]					
					[]					
					[]					
					[]					
					[]					
					[]					
					[]					
					[]					

보증서 발급대장(토지 · 건물)												
시 · 군 · 구												
신청 연월일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부동산표시			취득사유	신청자 인	발급계 인	비고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보 증 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시·군·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부동산의 표시					공고 기간	통지 일자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수령 자 인 (서명, 날인)	비고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출 석 요 구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소유사실에 관한사항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발급신청자 주소	
	확인서발급신청자 성명	

귀하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보증서 발급 관련 보증취지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보증취지 확인서

보증인	성명
	주소
보증(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재	
확인 일시·장소	일시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위 보증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한 바 그 결과는 위와 같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성명 급

(서명 또는 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귀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였기에 통지 하니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만료 이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 부동산)

토지(임야)·건 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임야)·건 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서발급신 청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귀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였기에 통지 하니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만료 이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현장조사 보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소유자	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인근 주민의 의견	성명	주소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실제 소유자는 ()이다	
	성명	주소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실제 소유자는 ()이다	
현재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성명 급

(서명 또는 인)

공 고 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취득사유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유의사항

-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만료일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발급신청이 있다는 공고가 있는 바 별첨 증명서류와 같이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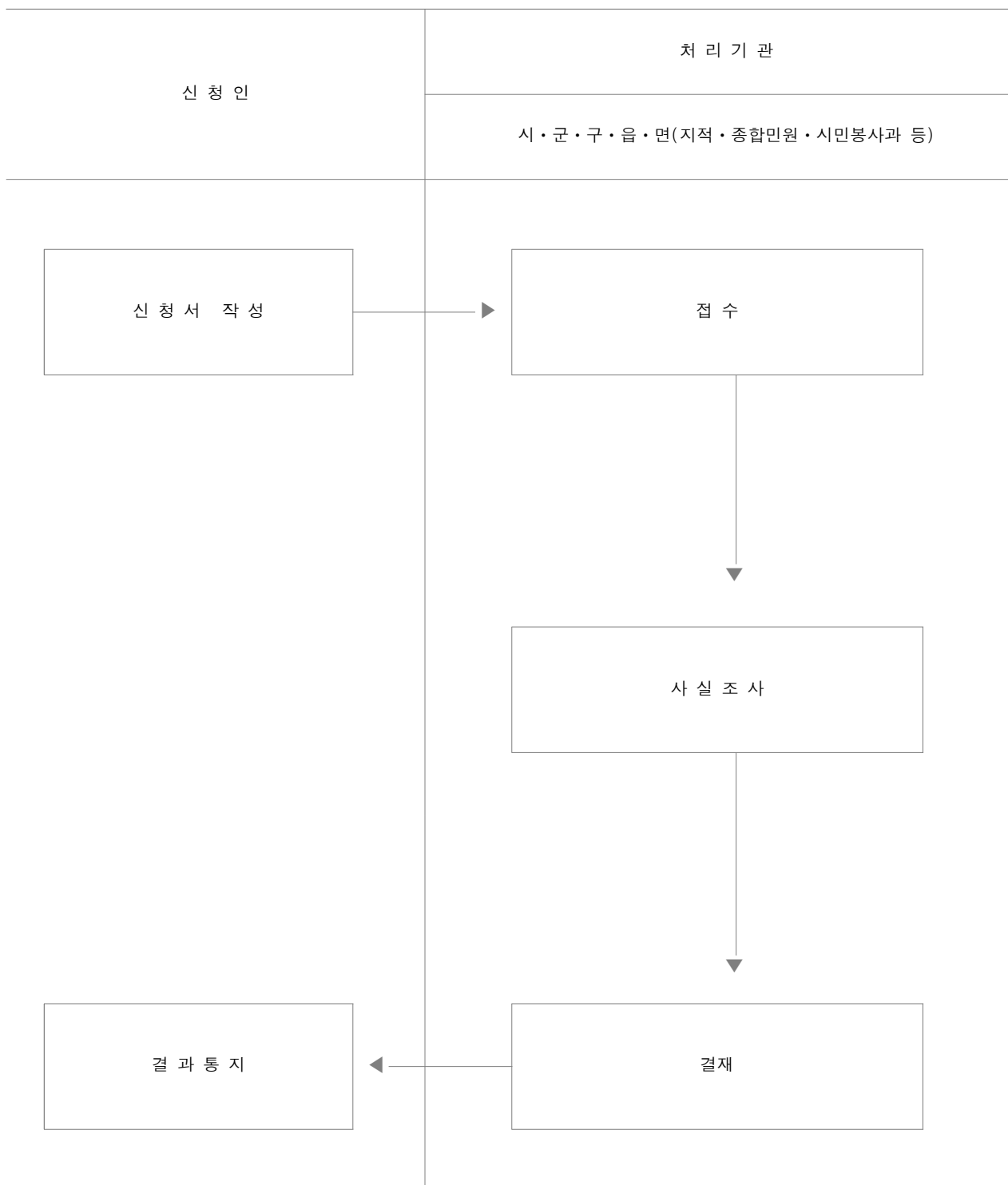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출 석 요 구 서

성명(법인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소유사실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 발급신청자 주소	
	확인서 발급신청자 성명	

귀하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관련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제 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성명(법인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주소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사유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제 호

확인서발급기각결정 통지서

성명(법인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하였음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사유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 락 처	(02) 2110 - 3507